

☎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김기성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[6572] / 팀원 이승아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8636호

시행일자 2024. 11. 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4. 10. 28. ~ 11. 3.)

-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2024년 10월 28일 ~ 11월 3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1	2024. 10. 28.	제2024-219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 별표1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 - 레보투스시럽(레보드로프로피진) 60mg/10mL 등 ○ 별표1 중 별지2 기재 약제 삭제 - 레보투스시럽(레보드로프로피진) 3g/500mL 등
2	2024. 10. 29.	제2024-215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1) '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', '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'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, 2) '카테터 고정용-중심정맥관 고정용(CHG 함유 필름형) 본인부담률 변경
3	2024. 10. 29.	제2024-216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 [별표 2] 제1호가목의 '약물 및 독물-에탄올(화학반응-장비측정)(정량)-간이검사' 와 'NK세포 활성화도 검사-[정밀면역검사]'란 삭제(비급여 전환) ○ [별표 2] 제1호다목의 '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' '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' 란 삭제(필수 급여 전환) ○ [별표 2] 제1호다목의 '카테터 고정용'항목 본인부담률, 적용일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4	2024. 10. 29.	제2024-217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'누-532-라 에탄올' 과 '누-763-가 NK 세포 활성화도 검사' 비급여 전환
5	2024. 10. 29.	제2024-218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 'NK 세포 활성화도 검사' 급여기준 삭제(비급여 전환),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등 다수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 목 및 주요내용
6	2024. 10. 29.	제2024-220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○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 등
7	2024. 10. 29.	제2024-221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[별표 2] 제1호가목 '일반면역검사-C형 간염항체(간이검사)-유형II' 적용일, 평가완료차수, 평가주기 변경
8	2024. 10. 29.	제2024-222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 일반면역검사-C형간염항체(간이검사) 유형II 급여기준 일부 개정
9	2024. 10. 30.	제2024-224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 '희소필수 치료재료 (COPERNIC)의 급여기준 신설'
10	2024. 10. 30.	[심평원 공고 제2024-237호]	「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개정·공고 안내 ○ 사전심사 대상 변경(울토미리스주, 솔리리스주 등) 등
11	2024. 10. 31.	제2024-227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(본인부담률, 인정횟수) 등 다수
12	2024. 10. 31.	제2024-228호	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○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(18세이상) 확대 등
13	2024. 10. 31.	제2024-229호	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 ○ 혈소판기능검사, 경피적 간암냉동제거술, 실린더식 주입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, 평가주기,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
14	2024. 10. 31.	제2024-230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 혈소판응집능검사 급여기준 신설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<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> 끝.

#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